

의안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154)

1. 의안명 : 울산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

2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'98. 12. 11.
- 나.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 : '98. 12. 14.
- 라. 위원회 심사 : '98. 12. 24.

3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사회산업국장 정을출)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울산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등에 위탁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울산광역시중구 자원봉사센터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음.

다. 관련법규

- 지방자치법 제95조
- 행정자치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
4. 검토보고요지

- 구군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'98.12.11일부터 전국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
- 자원봉사단체간 상호 협조체계 구축은 물론 프로그램개발 보급으로 봉사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,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에 있다고 볼 수 있음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울산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

의안 번호	154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: 1998. 12.

제출자: 중 구 청 장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울산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등에 위탁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울산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운영을 위탁하고자 함
(안 1 조)

3. 근거법규

가. 지방자치법 제95조
나.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

4. 제정조례안 : "따로 붙임"

5. 참고사항

울산광역시중구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'98. 11. 13 ~12. 2까지 20일간 공보(일간지)에 입법예고하고, 제정조례안의 전문을 구 사회복지과와 민원실, 동사무소에 입법예고 기간동안 비치 공시하였으나 주민의견 제시사항 없었음.

울산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의 권한에 속하는 울산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등에 위탁함으로써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권한의 책임과 명의 표시)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사무는 위탁받은자의 명의로 책임하에 시행한다.

제3조(준용) 권한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관련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이 조례 시행일 당시 위탁된 사무는 본 조례에 의하여 위탁한 것으로 본다.